



북한 진출 기업 지원대책과 기업의 대응

박양우 / 통상산업부 무역협력과장

「남북관계 현안문제에 대한 정부조치」가 발표됨으로써 남북경협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정부의 단계적·점진적 남북경협 추진방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북한의 핵문제로 인하여 유보되었던 경협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금번 발표문에서도 “이번 조치는 핵문제를 남북경협에 연계시켜 온 일관된 입장의 토대 위에서 취해지는 것이며, 따라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따라 단계적이고 신중히 추진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인해 남북경협에 대한 과잉기대를 갖거나 서두르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차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업인과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부의 북한 핵문제와 경협의 연계정책으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공식·비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전환을 요구하던 기업들이 일제히 환영하고 나섰다. 기존에 남북경협을 구상하던 기업들은 보다 행보를 빨리 하고, 새롭게 남북경협에 대열에 합류하고자 관심을 표명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다.

반면 북한 당국은 우리 정부의 발표에 거부의

사를 표명한 바 있고,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북경지사를 통해 우리 기업에 대해 선별적으로 초청장을 발급하는 등 남북경협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듯한 인상을 나타내고 있다.

엄밀하게 짚어보면 정부의 「11·8 조치」는 북한과는 무관하게 우리측 기업들의 남북경협 활동 범위를 넓혀준 것 뿐이므로, 북한이 거부의사를 표명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과민 반응인 것이다.

하지만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일방의 추진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으며, 북한이 표면적으로는 거부의사를 표명하면서도 기업 차원에서는 불밀접촉을 지속하는 등 여전히 남북경협에 임하고자 하는 의도도 여러 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이 남북경협에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가?

첫째는 남북경협은 상호 보완적이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경제적 흐름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해온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들이 품질이나 기술 수준, 이미지 등 비가격적 요인에서는 여전히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노동비용, 토지 등 자본비용면에서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임금에 비해 우수한 노동력이 풍부

하므로 남한의 기술, 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할 경우 우리의 경쟁력은 한층 제고될 수 있다는 현실적 이유이다.

둘째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북방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관점이다. 향후 러시아, 중국, 몽골 등 동북아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감안할 때 북한지역에 미리 진출하여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면서, 기반을 닦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이다.

셋째는 북한 진출 기업이라는 선전의 효과, 남북경협 분야에서 타기업에 뒤지고 싶지 않은 기업간 경쟁의식, 심지어는 북쪽 내 고향에 기업을 갖고 싶다는 인간 본연의 욕구도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기업이 남북경협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추진하는 그 실천적 가능성은 북한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북한은 대외관계 개선을 통한 외자유치에만 적극적일 뿐, 시장경제원리 도입, 소유제도의 다양화, 비교우위에 따른 산업특화 등 체제개혁을 통한 투자유인 제공은 시도하지 않고 있다.

이는 개정된 합영법 시행세칙에서 “북한의 사회제도와 자주권을 존중하는 외국투자자와 평등 호혜의 원칙에서 합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 점이라든지, 외국인 단독투자는 나진·선봉 지역에만 선림이 가능토록 한 것 등 사회주의 체제를 광고하듯 하는 내용을 강화한 것을 볼

때,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더우기 남한기업이 들어오면 체제가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한 북한의 지도부가 우리 기업이 대거 북한에 진출하거나, 북한 전역에 우리 기업인이 활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현코자 하는 한, 남북경협은 북한 특유의 정치·사회 지배체제와 자존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범위 내의 경협이라야 실천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은 대외선전효과를 위하여 우리 기업의 북한진출을 허용할 것이나 그 수는 그들의 체제유지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필요한 최소한에 국한시킬 가능성이 크다. 더욱 외국기업과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로 체제유지에 악영향을 초래할 경우, 현재 남북관계로 보아 남한기업을 우선적으로 배제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타국기업에 비

“
북한이 체제유지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경제정책을 구현코자
하는 한, 남북경협은 북한 특유의 정치·사회
지배체제와 자존심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과
범위 내의 경협이라야 실천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해 우선적인 불이익을 받을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기업도 성급하게 대북 진출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조사와 객관적 검증을 거쳐 우선 실현가능한

부분부터 차분하게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교역을 통하여 신뢰를 구축하고 위탁가공 교역의 활성화를 통하여 투자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투자의 경우 당국자간 투자보장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이전에는 소규모

시범사업 투자로 상호신뢰와 경험을 쌓은 후 점차 대규모 프로젝트 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는 「11·8 경협활성화 조치」의 후속지침으로 남북경협 처리규정, 국내기업 및 경제단체의 북한사무소 설치지침을 제정하고,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한 관련 설비를 반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럼에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남북경협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남북한 공동으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남북간에 교류협력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체결·발효된 상태에 있으나, 세부절차에 관한 합의 없이는 적용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국내의 타 법률들을 준용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남북교역 대 상품목 및 반출입 절차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 공고, 통합 공고 등에서 정한 내용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WTO 체제의 출범과 민족내부간 거래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외무역법의 준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더욱이 남북교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남북한 교역이 92년 2억 1천 3백만달러로 정점을 이룬 후 담보상태에 있다. 실제로 위탁가공 교역이 급증세를 보인 점을 감안한다면 일반물자 교역은 절대적으로 감소된 상태이며, 반출입액의 1/10 정도로 심한 역조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남북교역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치·안보적 상황, 북한의 경제적 요인, 남북교역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도 많다.

첫째는 교역당사자들의 정보부족이다. 남북교역이 간접교역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대북교역을 전문으로 하는 해외전문 중개상 및 해외에 주재하는 북한무역상사들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상대기업을 물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는 정부는 물론 무역진흥공사, 무역협회 등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다.

둘째는 교역절차가 번잡하다는 것이다. 접촉 및 상담 → 반출입 → 통관의 절차가 까다롭기

“

교역절차가 번잡하다는 것이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고, 점차 북미, 북일 등의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는 냉엄한 국제무역 환경에서 남북교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그지 없다. 우선 교역 당사자가 북한 주민과 상담하기 위해서는 접촉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한승인 품목의 반출입은 통일원 승인과 관계부처의 반출입 추천이 필요하다. 또 수출입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북한과의 거래임을 입증하는 오퍼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3국의 중개업자들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북한 무역업자에게 반출된다는 것이 서류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통관 과정에서도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북한이 원산지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위장반입 사례가 있고 북한 당국과 원산지 확인에 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더욱 까다로울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북미간 핵협상이 타결되고, 점차 북미, 북일 등의 관계가 정상화될 경우 이러한 까다로운 절차

는 냉엄한 국제무역 환경에서 남북교역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에서 접촉은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의 문제가 수반되므로 사전 방북 승인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야 하겠지만 제3국에서의 접촉은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간 반출입 승인도 정치, 외교, 안보상으로 문제를 야기할만큼 민감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외국환은행에서 승인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업보호나 수급차원 등 특정요인으로 반출입이 제한된 품목은 관계부처의 추천서만 첨부하도록 간소화 되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기업도 변해야 한다. 남북경협이 단순히 경제논리로만 추

진될 수는 없으므로, 상담이나 접촉과정에서 우리 업체간 과당 경쟁을 하거나, 실현 불가능한 협의를 하

는 일 등이 발생해서는 안될 것이며, 남북경협에 대하여 우리 국민이 기업에 너무 과잉기대를 갖지 않도록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는 보다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는데 남북간 교역 유망 품목, 특히 북한이 반입 가능한 품목의 개발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94년 1~11월중 대북 반출 품목은 위탁가공용 섬유류가 74.9%이고, 대북 반입 품목은 철강금속류와 농림수산물이 83.2%에 달한다. 또 대북반출은 위탁가공용 원부자재를 제외하면 대략 4백만달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게 반출이 부진한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며 외화가 부족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반출이 안된 까닭이다.

북한의 대외무역구조상 원유 등 에너지, 식량, 자동차 및 기계류의 수입이 전체수입의 61.1%에 달한다. 따라서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대북 반출 품목을 개발하고, 이를 명시적으로 별도 공고함으로써 남북교역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한다.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소위 민간품목의 반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필요물자를 일본, 대만 등 제3국에서 반입할 수 있으므로 우리만의 규제는 실익이 없다.

남북경협은 사람이든 물자든 양적교류의 증대

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교류가 없이 경협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남북경협을 위한 제도도 인적교류든 물적교류든 교류가

“ 이렇게 반출이 부진한 것은 북한이 사회주의 경제체제이며 외화가 부족하다는 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실제로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품의 반출이 안된 까닭이다.

” 활성화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방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가 북한에게 개혁하라고 주장하는 것 보다 우리와의 교류를 통하여 북한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서히 변화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남북교역이 민족내부간 거래임을 국제 무역사회에 인식시킬 필요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행 대외무역법에 의존하고 있는 남북교역 대상물품 및 반출입 절차도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내유통에 준하는 절차로서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금액 이하(예: 1만달러 미만)의 남북한 물품이 한반도 내에서 거래될 경우에는 반출입

승인 절차 없이도 가능토록, 즉 육·해상에서 보따리 장사 등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아무리 민족 내부간 거래라고 주장해도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국제부대에서 민족내부간 거래로 인정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통상산업부에서도 95년중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를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다. 남북교역 대상물품의 생산지(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도 그 중 하나이다.

현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관련 규범들이 남북교역에도 준용되는 실정인데, WTO체제가 출범할 경우, 대외무역법상의 원산지 규정은 HS코드로별로 판정기준을 정하는 등 요건이 훨씬 강화될 것이며, 이것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남북교역이 위축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고율의 조정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은 북한을 통하여 우회 반입하거나 북한에서 원재료를 수입, 가공을 거쳐 남한으로 반입될 경우, 우리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품목에 대한 조정방안과 우리의 원사재 공급으로 북한에서 위탁가공된 제품이 제3국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리 상표로 원산지를 표시하게 함으로서 수출촉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안도 강구 중이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남북경제공동위원회가 개최되면, 남북간 직교역에 관한 세부합의서가 체결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남북교역 및 위탁가공 교역, 소규모 시범투자사업의 지원 및 촉진을 위하여 무역협회나 무역진흥공사,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 기관의 주관으로 북측인사의 초청설명회, 전시회, 위탁가공 교역 촉진단, 경협사절단 등의 지원사업도 구상 중이다.

상황이 허락한다면 일정 장소에 무역상담소를 설치하여 남북교역 당사자간 상담 및 계약체결, 정보교환의 장소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으며, 상담소 부근에 남북교역 물자 교환소를 설치하여 불류비용을 절감케 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남과 북의 온 민족이 공존공영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한민족이 자유, 인권, 복리를 누리며 한반도가 동북아 평화와 인류번영의 가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 북미 관계가 개선되면 우리가 소위
민간품목의 반출을 규제한다 하더라도
북한은 필요물자를 일본, 대만 등
제3국에서 반입할 수 있으므로 우리만의
규제는 실익이 없다.”

경협이 통일 수단이란 통일후의 대비는 기업은 기업 본연의 목적을 추구하면서, 북한이 스스로 필요해서 우리와 경협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는 정부대로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가 꼭 필요한 파트너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과 정부가 이런 역할을 다 해내야 우리나라 통일의 밝은 미래가 약속된다 하겠다. **統**